【 11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12. 2.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신설된 내용을 양주군군세조례에 삽입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서류의 교부방법중 리·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게 하여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12조의 2 신설)

나.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지방세법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세율을 군수가 표준세율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동법 동조제1항의 "표준세율"로 적용하고자 함. (안 제21조의2 신설)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양주군리장임명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리장과 양주군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균등할(주소지할)은 제외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세율) 법제188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건축물

(1)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1,2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1,6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2,2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3,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 70

(2)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제1목 내지 제2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地方稅法中 改正法律
(最終案)

內 務 部

제39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제39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법
<신 설>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9절 보 칙	<삭 제>
제41조(도세징수교부율)①도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징수금의 100	제41조(도세징수교부율)①------ --이 조----------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

	③稅務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課稅情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情報를 알게 된 者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情報를 제공받아 알게된 者중 公務員이 아닌 者는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第70條(課稅前適否審査) ①納稅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課稅가 適法한지의 여부에 관한 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1. 稅務調査결과에 대한 書面通知

2. 課稅豫告通知

3. 第1號 및 第2號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통지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이하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의 請求節次 및 審査方法 등에 관한 사항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第71條(修正申告) ①이 法에 의한 申告納付期限내에 地方稅를 申告納付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60日이내에 修正申告를 할 수 있다.

1. 申告納付한 후에 課稅標準額 및 稅額計算의 근거가 되는 面積·價額등이 工事費의 精算, 建設資金의 利子計算, 確定判決

의 所有에 속하는 財産(第18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契約者에게 納稅義務가 있는 財産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財産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韓民國政府機關의 財産에 대하여 課稅하는 外國政府의 財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財産------- ---------- ---------- ----------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韓民國 政府機關의 財産에 대하여 課稅하는 外國政府의 財産 2. 第18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契約者에게 納稅義務가 있는 財産
② (생 략)	② (現行과 같음)
第188條(稅率) ①財産稅의 稅率은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88條(稅率) ①----------標準稅率----------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新 設>	⑥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産稅의 稅率을 第1

	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第196條의6(納期와 徵收方法) ① (생 략)	第196條의6(納期와 徵收方法) ① (現行과 같음)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期마다 늦어도 納期開始 5日전에 그 期分의 納稅告知書를 發付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를 新規登錄하거나 抹消登錄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수시로 賦課할 수 있다.	②---------- ---------- ---------- ---------- 다만, 自動車를 新規登錄 또는 抹消登錄하는 경우와 課稅對象 自動車가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으로 되거나,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 自動車가 課稅對象으로 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수시로 賦課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新 設>	第196條의7(納稅義務의 承繼) 自動車를 賣買등으로 承繼取得한 者는 第196條의6에서 規定하는 당해 期分의 自動車稅(第196條의6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隨

는 그 財産管理人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業所에 送達한다.

③ 納付管理人이 있는 때에는 納付 또는 納入의 告知와 督促에 관한 書類는 그 納付管理人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業所에 送達한다. (62. 12. 29 改正)

第51條의2(書類送達의 方法) ①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送達은 交付 또는 登記郵便에 의한다. (78. 12. 6 改正)

② 書類를 交付하였을 때에는 送達書에 受取人이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受取人이 署名捺印을 拒否할 때에는 그 사실을 附記하여야 한다. (62. 12. 29 新設)

③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連帶納稅義務가 있는 者에 대한 納稅告知書, 納入通知書, 督促狀 기타 徵收에 관한 書類의 送達은 代表者가 있을 때에는 代表者에게, 代表者가 없을 때에는 徵收上 편의한 者에게 한다. (62. 12. 29 新設)

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3누 16864, 1994. 1. 11)

【관례】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시 서류의 도달시기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 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는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87. 6. 23, 85누 944)

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 소재지의 주소와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89. 9. 12, 89누 3250)

第22條(書類의 送達) 法第51條의2第2項의 규정에 의한 송달서는 別紙第21號書式에 의한다. (79. 3. 21 改正)

【관례】 주소 등을 알 수 없이 공시송달하는 경우의 주소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87. 6. 14, 87누 375)

○ 등기자에 대한 송달은 직법

송달받을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되며

경기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

경 기 도

경기도조례 제 호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27조의2"를 "제25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시.군의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리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최종 송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중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를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15인 이상 20인이하"를 "20인이상 30인이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도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기타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 2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3명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③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세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세율) 법 제1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5항중''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부동산등기의 세율)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 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별 지

☞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조의2(신설)와 관련

1. '97지방세 고지서 등기송달비용 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 세목	등기우송건수			반송율(%)	등기우편료부담액			등기1매당우송비용(B/A)	비고
	계	등기우송건수(A)	반송건수		계(B)	등기우송료	반송료		
계	**15,774**	**14,468**	**1,306**	**9.18**	**17,539**	**16,252**	**1,285**	**1,212원**	
회 천	5,389	4,929	460	9.3	6,104	5,618	486	1,238원	
주 내	3,223	3,090	133	4.3	3,435	3,311	123	1,111원	
은 현	2,038	1,842	196	10.6	2,258	2,071	187	1,226원	
남	1,640	1,485	155	10.4	1,877	1,727	149	1,264원	
광 적	2,195	1,931	264	13.6	2,432	2,185	247	1,259원	
백 석	477	444	33	7.4	528	497	31	1,189원	
장 흥	812	747	65	8.7	905	843	62	1,211원	

주)'97재산세·종합토지세·1기분자동차세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현황 집계표임

2. 참고로 인접 타시군 송달료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포천·동두천·파주·고양시는 각 500원의 수당을, 의정부시는 1,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7 호

1997년 11월 17일 (월)

차 례

고 시

○양주군고시 제1997-111호 준도시지역(봉암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고시 ····· 3

○양주군고시 제1997-112호 국토이용계획변경(용도지역)결정 고시 ····· 5

공 고

○양주군공고 제1997-397호 남면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고 · 8

○양주군공고 제1997-398호 자치법규입법예고 ····· 9

○양주군공고 제1997-399호 자치법규입법예고 ····· 9

○양주군공고 제1997-400호 자치법규입법예고 ····· 10

○양주군공고 제1997-401호 자치법규입법예고 ····· 11

회 람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67 호

3.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양주군 도시과 및 남면 산업계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과 소유자 명세서 : 붙임
5. 기 타 : 관계 도서를 상기 공람장소에서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공고 제1997-398호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1월 7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신설된 내용을 양주군군세조례에 삽입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서류의 교부방법 중 리·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게 하여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1매당 500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세율을 군수가 표준세율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동법 동조1항의 "표준세율"로 적용하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9-1287, 128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양주군 공고 제1997-399호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1월 7일

양 주 군 수